(뒤 쪽) 작성방법 1.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⑲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 2. 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｢법인세법 시행규칙｣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“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”을 적습니다. 3. ⑦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부인액(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)을 적습니다. 4. ⑨ 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, ⑥란의 기중 충당금환입액, ⑦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(기중환입분은 제외합니다)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 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, 그 잔액이 음수(－)인 경우는 “0”으로 적고, ( )안에 그 잔액을 적습니다. 5. ⑩ 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에는 ⑳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이 퇴직 시 퇴직급여추계액과 ㉑ 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｣에 따른 추계액 중 큰 금액을 ㉒ 세법상 추계액란에 적은 후 그 금액에 아래의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 사업연도 개시일 2010년 중 2011년 중 2012년 중 2013년 중 2014년 중 2015년 중 2016년 중 설정률 30% 25% 20% 15% 10% 5% 0%(폐지) 6. ⑪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｢국민연금법｣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. 7. ⑯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, ⑨ 차감액란의 미달액(△)은 손금산입합니다. 8. ⑰ 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적되,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｣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, ⑱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과 ⑲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 9. ⑳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란은 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｣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며,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. 10. ㉑ 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｣에 따른 추계액란은 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｣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써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적되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며,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. 다만,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